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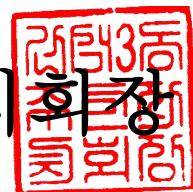
간석3동 주민자치회 공고 제2025 - 5호

남동구 간석3동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 일부개정 공고

『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40조 규정에 따라 『간석3동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을 일부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2. 24.

간석3동 주민자치회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위원의 접수·선정·위촉) ①(생략) ② 위원 선정·위촉은 <u>조례 제8조 및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른다.</u> ③ 모집인원보다 접수자가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u>추첨하지 않는다.</u> <u><신설></u>	제7조(위원의 접수·선정·위촉) ① (<u>현행과 같음</u>) ② ----- <u>조례 제7조의2</u>, ----- -----. <u><삭제></u> ④ <u>조례 제7조제1항제3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건강보험득실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u>
제8조(추첨 운영위원회) ① <u>위원 모집에 따른 공개추첨이 있을 경우에는 조례 제8조 제8항 및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주민자치회 내에 추첨 운영위원회를 둔다.</u> ② <u>추첨 운영위원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기관 등에 의뢰하여 추첨 운영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모든 추첨운영위원은 공개추첨이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u> ③ <u>추첨방식 및 절차는 추첨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024. 2. 27. 개정></u>	제8조(추첨 운영위원회) <u><삭제></u> <u><삭제></u> <u><삭제></u>

■ 본문 : “별첨”

주 민 자 치 회 및 주 민 자 치 센 터 운 영 세 칙

(제정) 2021.01.22.

(개정) 2023.02.14.

(개정) 2024.02.27.

(개정) 2025.12.09.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0조 및 「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 규정에 따라 간석3동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운영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라 함은 간석3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각급 학교·기관·단체에 속한 사람을 말한다.
2. “시설”이라 함은 조례 제27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간석3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설치되어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각 공간 및 장비 등을 말한다.
3. “프로그램”이라 함은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이와 연계하여 운영되는 조례 제27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4. “관내”라 함은 행정구역상 간석3동 관할 구역을 말한다.
5. “다른 지역”이라 함은 행정구역상 간석3동 관할 구역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6. “카드”라 함은 사용료 및 수강료를 납부할 수 있는 모든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카드를 말한다.

제3조(명칭)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남동구 간석3동 주민자치회 명칭은 “간석3동 주민자치회”(이하 “주민자치회”라 한다)라 한다.

②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남동구 간석3동 주민자치센터 명칭은 “간석3동 주민

자치센터” (이하 “자치센터” 라 한다)라 한다.

제4조(소재지) 주민자치회 및 자치센터는 간석3동 행정복지센터(용천로186) 내에 둔다.

제5조(운영원칙) ① 주민자치회 및 자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지역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지역문화 진흥
 4. 주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 모색
 5. 주민의 화합과 세대통합 및 지역 간 협력 도모
 6.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7. 시설 및 프로그램 공공성 원칙
 8. 수혜 형평성의 원칙
- ② 수탁업무와 주민자치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수익금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지역사회에 환원되어야 한다.
- ③ 주민자치회 및 자치센터의 운영사항은 주민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 주민자치회

제6조(기본이념) 주민자치회는 주민 누구나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역 공동체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며 책임지는 민주적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접수·선정·위촉) ① 위원 신청 또는 추천 시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위원의 선정·위촉은 [조례 제7조의2](#), 제8조 및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른다.

[<2025. 12. 09. 개정>](#)

③ [<2025. 12. 09. 삭제>](#)

- ④ 조례 제7조제1항제3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건강보험득실확인서 또는 재직 증명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 하여야 한다. <2025. 12. 09. 신설>

제8조(추첨 운영위원회) ① <2025. 12. 09. 삭제>

② <2025. 12. 09. 삭제>

③ <2025. 12. 09. 삭제>

④ 운영위원회는 구성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다. <2024. 2. 27. 개정>

제9조(위원 해촉 요구) ① 조례 제20조제1항제6호의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월례회의 연속 3회 이상 불참자 또는 연 5회 이상 불참자
 2. 자치회장을 제외한 위원이 1개 이상 분과에 소속되지 아니하거나 활동을 하지 않거나 분과회의 연속 3회 이상 불참자 또는 연 5회 이상 불참자 <2024. 2. 27. 개정>
 3. <2024. 2. 27. 삭제>
 4. 주민과의 심한 갈등을 유발하거나 현저한 민원을 야기시킨 자
 5. <2024. 2. 27. 삭제>
-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로 사전 불참통보(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자치회에 보고 시 유효)를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촉을 요구할 때에는 조례 제20조제2항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임원 및 위원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1. 자치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감사 2명
4. 간사 1명
5. 분과위원장 3명(각 분과별 1명) <2023. 2. 14. 신설>

② 자치회장 결원 시에는 부회장 중에서 연장자로 선임하고, 기타 임원의 결원 시에는 차기 정기회의 시 선출하되, 긴급을 요하는 사항 발생 시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선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임원은 임기만료 6개월 미만일 경우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023. 2. 14. 개정>

④ <2024. 2. 27. 삭제>

⑤ <2024. 2. 27. 삭제>

제11조(임무)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자치회장을 보좌하며 자치회장 부재 시 자치회장 업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주민자치회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의 정기 감사와 필요한 경우 수시 감사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제출하여야 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관장하며 각 분과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⑤ 간사는 주민자치회의 금전출납을 담당하며, 주민자치회 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보고와 자치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정기회의 시 보고한다. 회의 결정사항 보고는 회의록으로 대신하며 사무처리 결과보고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⑥ 위원은 조례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회의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 성립과 의결) ① 위원은 1인 1표의 의결권을 갖는다.

② 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회의 시 필요한 경우 무기명, 비밀투표의 방법으로 가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2023. 2. 14. 신설>

제13조(회의) ① 주민자치회는 회무(會務)·회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의를 둔다.

1. 주민총회
2. 정기회의
3. 임시회의

4. 분과회의
5. 임원회의
6. 기타 필요한 회의

② 간사와 분과위원회 총무는 제1항의 회의 종료 후 지체 없이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회의 개최) ① 주민총회는 최고 의결기구로서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회의의 의결에 따라 개최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정기회는 조례 제6조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세칙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운영세칙의 변경(제정·개정·폐지)
2.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결정 및 변경
3.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의 승인
4. 임원 선출 및 해임, 위원(분과위원 포함) 해촉 요구
5. 분과위원회 구성
- 6 그 밖에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주민자치회의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되, 매월 2번째 화요일에 개최한다. 다만, 차기 정기회의가 공휴일 등으로 개최가 어려울 경우 회의를 거쳐 정기회의 일자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동장이 자치회장과 협의한 경우 또는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 정기회의에 앞서 임원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임원회의는 자치회장, 부회장, 감사, 간사,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하며, 전문적인 의견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문가 등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2023. 2. 14. 개정>

제15조(분과위원회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3개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자치운영분과위원회 :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예산편성, 각종 행사 등
- <2024. 2. 27. 개정>

2. 환경복지분과위원회 : 지역현안발굴, 마을가꾸기, 환경개선사업 등 <2023. 2. 14. 개정>

3. 교육문화분과위원회 : 교육사업, 각종 문화사업 등 <2024. 2. 27. 개정>

② 주민자치회는 반드시 실행해야 할 의제사업 및 활동 상황 등에 따라 분과를 신설·폐지하거나 통·폐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특별 분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는 자치회장을 제외한 주민자치회 위원과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참여하고자 하는 자로 구성하며, 주민자치회 위원을 제외한 분과위원은 자치회장이 위촉한다.(별지제3호서식)

④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예비후보자는 주민자치회 분과에 소속되어 활동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각 분과위원회에는 분과위원장과 총무를 두며, 총무는 분과위원장이 지명한다. 자치부회장, 감사, 간사는 분과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2024. 2. 27. 개정>

⑥ 분과위원회는 전체 위원 수를 감안하여 적정한 수의 분과위원으로 자치회장이 정기회의에서 구성하여 의결하며 위원은 하나 이상의 분과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⑦ 분과위원회는 마을공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전문가·관계자 등의 자문과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16조(분과위원의 임기) 주민자치회 위원이 아닌 분과위원의 임기는 해당사업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17조(분과위원회 회의개최) 분과위원회는 마을의제를 실행하는 실질적 집행기구로 각 분과 중심으로 마을의제 사업의 실행을 위한 회의와 활동을 포함하여 분과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 총무는 전화, 문자 등을 통하여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 및 안건을 분과위원 및 동장, 자치회장에게 공지하여야 하며, 동장과 자치회장은 필요시 참관 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023. 2. 14. 개정>

제18조(분과위원회의 운영) ① 분과위원회는 회의 개최 후 소속 위원들과 소관

업무에 관한 계획수립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분과회의 결과 등에 관한 사항을 주민자치회에 보고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논의된 사항 중 자치센터 기금사용 및 주민자치회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결정된 사항에 대해 주민자치회 정기회의에 상정하여 심의·의결하도록 한다.

③ 정기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분과위원회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19조(총회 개최) ① 정기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조례 제13조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의결에 따라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회의 청구가 있을 때

③ 주민총회는 해당 동 주민의 1000분의 5 이상 참여(사전 의사결정 투표 참여자를 포함한다.)로 성립되며,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절차 및 방법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한다.

제20조(사업계획 수립) ① 분과위원장은 총회 개최 3개월 전까지 다음연도 당해 분과의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자치회에 보고한다.

②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목적 및 추진 방향
2. 사업기간 및 소요예산
3. 월별 추진계획
4. 평가계획
5. 타 단체 협조사항 등

③ 사업계획을 심의할 때에는 단체별 중복된 사업과 동 전체로 확대해야 하는 사업을 찾아내어 통합하거나 확대할 것을 권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확정한다.

제3장 회비

제21조(회비) ① 자치위원들의 원활한 지역 활동 봉사를 위하여 별도의 회비를 징수하며 자치회의 연간 자체계획에 의해서 구 예산, 기금과는 별도로 운영관리 한다 (『남동구주민자치회및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에관한조례』에 따른 운영과는 무관하다)

② <2024. 2. 27. 삭제>

③ <2024. 2. 27. 삭제>

④ <2024. 2. 27. 삭제>

⑤ <2024. 2. 27. 삭제>

제22조(회비) ① <2024. 2. 27. 삭제>

② <2024. 2. 27. 삭제>

③ <2024. 2. 27. 삭제>

④ <2024. 2. 27. 삭제>

⑤ <2024. 2. 27. 삭제>

제23조(회비) ① <2024. 2. 27. 삭제>

② <2024. 2. 27. 삭제>

③ <2024. 2. 27. 삭제>

④ <2024. 2. 27. 삭제>

제24조(표창) ① 간석3동 주민이나 위원 중에서 동 발전을 위하여 특별한 공적이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 등에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표창추천 대상자는 주민자치회 회의 및 행사 등의 참석도 및 기여도 등을 반영하여 선정한다. <2023. 2. 14. 개정>

② 자치위원 임기만료 시 주민자치회는 당해 위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다만, 재직기간 2년 이상 자치위원에 한한다. <2024. 2. 27. 개정>

제25조(위원의 겸직)

- ① <2024. 2. 27. 삭제>
- ② <2024. 2. 27. 삭제>
- ③ <2024. 2. 27. 삭제>

제4장 자치센터 운영

제26조(운영 등) ①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설의 관리는 동장이, 프로그램의 운영은 동장 또는 주민자치회에서 한다.

② 자치센터는 공휴일과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휴무일을 제외하고 연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자치센터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프로그램 특성상 시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동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자치센터의 이용·사용 대상 시설 및 개설 프로그램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시설

가. 4층 : 주민자치회 사무실, 프로그램1실, 프로그램2실, 회의실 <2023. 2. 14. 개정>

나. 5층 : 대강당, 프로그램3실

2. 프로그램의 구분

가. 문화, 취미, 교양강좌

나. 생활체육강좌

다. 아동교육강좌

3. 지역복지프로그램 : 무료 이·미용 봉사, 소외계층 특화프로그램 등

⑤ 자치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의 일일 운영상황을 시행규칙 별지 제28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시설의 사용·이용) ① 조례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자치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5일전까지 동장에게 시설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1항 규정에 따른 시설사용 신청에 대하여 동의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주민자치회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이를 주민자치회 심의에 상정하여 결정한다.

③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 및 단체는 자치센터 시설 사용에 있어 다른 지역 주민이나 단체에 우선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동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사용허가에도 불구하고 공공·공익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프로그램 운영) ① 동장은 프로그램을 새로이 운영하거나 폐강 또는 변경할 경우, 개설시기·운영시간·수강인원·수강료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수강인원을 선정할 경우, 온라인 신청 인원은 모집인원의 30%이상 배정하여야 한다.

③ 수강인원이 모집정원의 50%에 미달되는 프로그램은 폐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노인·장애인·아동 등을 대상으로 무료로 실시하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할 수 있다.

④ 프로그램 특성상 특성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격 및 방법·인원수 등을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수강신청) ①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수강자는 모집인원의 범위 안에서 접수순에 의하여 선정하며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대기자로 접수할 수 있다. 단, 온라인 신청자 선정은 수강료를 결제한 자로 한한다.

③ 동장은 프로그램이 특성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28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교구교재비 및 재료비 등) 프로그램 수강에 필요한 교구교재 및 재료구입비는 수강생의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31조(수강생 준수사항) ① 수강생 본인 부주의로 인한 귀중품 분실은 자치센터가

책임지지 않는다.

② 수강생 및 동반가족 본인 부주의에 의한 사고발생은 본인이 책임진다.

③ 운동 프로그램 수강생은 수강 전에 몸이 불편하거나 이상이 있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강사와 상의한 후 프로그램에 참가한다.

④ 수강생은 조례, 시행규칙 및 운영세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2조(사용료 등 징수 및 관리) ① 조례 제33조에 따라 사용료는 사용시설, 사용기간, 인원 등을 감안하여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 인기도, 인원 등을 감안하여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가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는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

1. 사용료는 시설사용자가 자치센터 시설사용 허가를 받은 후 사용 전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동장은 소정의 징수결의를 거쳐 징수하여야 한다.

2. 수강료는 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신청과 동시에 주민자치회가 징수하되 납부 영수증은 수강증으로 같음하며, 카드로 결제할 경우에는 카드 매출전표로 같음한다.

3. 수강료의 수입은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일별로 수입결의서를 작성하여 징수한 다음날까지 운영기금 관리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③ 수강료는 현금 또는 카드로 납부한다. 단, 온라인 신청자의 경우에는 카드로만 납부할 수 있다.

④ 조례 제33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의 징수범위와 요율은 별표 1과 같다.

⑤ 조례 제33조제4항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기준과 비율은 별표 2와 같다.

⑥ 조례 제33조제7항에 따른 사용료의 회계책임자는 행정복지센터의 주민자치업무 담당자로 하며, 수강료의 회계책임자는 주민자치회 간사로 하되, 필요시 자원봉사자나 행정복지센터의 주민자치 업무 담당자가 보조할 수 있다.

⑦ 조례 제33조제8항에 따른 수강료의 수입 및 지출 내역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반기별로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주민에게 공개한다.

제33조(주민참여) ① 동장 및 자치회장은 주민·단체의 자치센터 이용편익을 위한 지속적인 시설물 투자와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동장 및 자치회장은 인터넷 매체, 언론, 유인물 및 각종 교육 등을 활용한 주민참여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시설사용과 프로그램 이용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34조(강사의 선정 및 계약) ① 조례 제31조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는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공개모집으로 선정한다.

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한 당해 분야 자격증 소지자
2. 당해 분야의 전문지식 소유자 또는 강의 경험이 풍부한 자
3. 기타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하다고 동장이 인정한 자

② 강사는 프로그램의 신설·강사의 결원 등이 발생한 경우 동장 또는 주민자치회가 계약하며,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강의용역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5조(수당 등의 지급) ① 조례 제31조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 수당은 행정복지센터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족할 때에는 프로그램 수강료 징수금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강사 수당은 1회당 1시간을 기준으로 35,000원으로 한다. 단, 1회당 1시간을 초과하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추가 지급할 수 있으며, 추가 지급액의 범위는 자치회의 심의로 정한다.

③ 프로그램 특성상 연속하여 시간 단위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시간을 기준으로 제2항에서 정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강사가 운영하는 당해 프로그램의 당월 수강료 총 수입액이 당월 강사료 지급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월 수강료 총수입을 당월 강사료 총액으로 할 수 있다.

⑤ 강사 및 자원봉사자 등의 수당 지급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강사의 임무) ① 강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수강생 모집에서부터 프로그램 종료 시까지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과 수강생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② 강사는 경제적인 이익의 추구 보다는 봉사 우선 정신으로 강의에 임하여야 한다.
- ③ 위촉된 강사는 센터자랑 경연대회, 전시회 등 자치센터의 대내외 행사에 참가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④ 강사는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강생의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5장 운영기금 관리 및 기타사항 등

제37조(회계의 처리)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수강료 수입 등(이하 “운영기금”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운영기금은 주민자치회 명의로 관내에 소재한 금융기관에 예탁 관리한다.
2. 운영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경리관, 지출원, 감사 각 1인을 선정하여 회계업무를 처리한다.
3. 경리관(운영경비 책임관)은 자치회장이 겸임한다.
4. 지출원(운영경비 실무담당자)은 주민자치회 간사가 겸임하거나 조례 제30조에 따른 자원봉사자가 할 수 있다.
5. 경상적경비(강사수당 및 공과금 등)와 50만원 미만의 금액은 선 지출 후 정기회의 시 주민자치회에 그 사용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6. 50만원 이상의 경비를 지출할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자치회장은 자치센터의 수강료의 징수 및 집행에 대한 회계장부를 비치하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8. 운영기금은 조례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17조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자치회장과 동장이 협의하여 집행할 수 있다. <2023. 2. 14. 신설>

제38조(사업비 관리) 주민자치회에 교부되는 사업비는 용도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결과는 사업 종료 후 즉시 사업비 교부기관 및 부서에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제39조(결산 및 감사) ① 제32조제6항에 따른 회계책임자는 정기회의 시 전월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상세내역을 주민자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의 정기 감사와 필요한 경우 수시 감

사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제출 및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감사보고서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한다.

1. 자치센터 운영 및 업무 수행에 관한 감사
2. 주민자치회 운영 및 사업 추진에 관한 감사
3. 자치센터 및 주민자치회 회계 처리에 관한 감사
4. 주민자치회 정기 또는 임시회의 참석 여부 감사

④ 감사 자료인 행정 모든 문서 및 증빙자료는 5년 이상 보관한다.

제40조(감사수감) ① 자치회장은 조례 제38조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와 재정 지원 분야 등에 대한 감사를 받을 경우,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여야 한다.

② 자치회장은 감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감사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기관이나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공인의 비치) ① 주민자치회는 업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직인은 자치회장이 관리하며 별지 제6호 서식의 직인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직인의 신조, 개각 또는 폐기 시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③ 자치회장은 간사에게 직인을 관리하게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 직인 날인 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42조(서류의 비치 및 보존) ① 동장은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주민자치회 위원 명부
2. 그 밖에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서류

②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및 자치센터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주민자치회 회의록
2. 문서 접수·등록 대장

3. 각종 회계장부

4. 사업계획서

5. 주민자치회 및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서류

③ 주민자치회에서 작성한 서류는 공문서 관리규정을 준용하여 보관한다.

제43조(운영세칙의 준용) 운영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먼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하고, 성질상 준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조례, 시행규칙 및 다른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에서 필요한 경우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44조(개정) 이 운영세칙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운영세칙은 주민자치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강사비는 2024년 4월 강의 건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운영세칙 시행 당시 설치·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회 및 자치센터는 운영세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5.12.09.)

제1조(시행일) 이 운영세칙은 2026. 1. 1.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주민자치회 위원 접수부

[illegible]

[별지 제2호 서식]

분과 회의결과 보고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3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과회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분과명			
회의일시		장소	
참여위원			
안건			
회의결과 (결정사항)	1. 2.		
토의내용	1. 2. 3. 4.		
기타사항			

년 월 일

간석3동 주민자치회장 귀하

(앞면)

간석3동 주민자치회 분과위원 신청서

(제15조제3항 관련)

성명		생년월일	(남 / 여)
주소			
전화번호		주민자치위원 활동경험	유 ☐ 무 ☐
E-mail		직업 (직위)	
주요경력 및 활동사항 (자생단체 또는 마을활동 위주)			
작성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위와 같이 간석3동 주민자치회 분과위원회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남동구 간석3동 주민자치회장 귀하			
* 첨부서류 1. 직장·사업장 종사자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확인서류 1부 2. 개인정보동의서 및 서약서 각 1부			

주민자치회 분과위원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남동구 주민자치회 분과위원 신청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필수사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주민자치회 분과위원 자격 심사, 위원 선정 관련 정보 제공	서류접수일로부터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심사를 할 수 없어 위원 모집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 선택적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동의거부 가능)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직업, email, 주요활동 경력	주민자치회 분과위원 관리, 관련 정보 제공	서류접수일로부터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하셔도 주민자치 위원 접수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 개인정보 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 항목	보유기간
남동구청 인천광역시 행정안전부	통계수집, 사업정보제공	성명, 성별, 생년월일	서류접수일로부터 5년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심사를 할 수 없어 위원 모집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남동구 간석3동 주민자치회장 귀중

강의 용역 계약서

간석3동 주민자치회 회장 000(이하“갑”이라고 함)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
□ 강사(이하“을”이라 한다) △△△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1. 계약기간 : 20 . . . ~ 20 . . . 까지(개월)
2. 근무장소 : 간석3동 주민자치센터 강의실
3. 업무성격 : 프로그램 강사
4. 수강정원 : 명
5. 운영시간 : 1시간 또는 1시간30분/1회
6. 근무일 : 주 회
7. 수당의 지급

○ 지급액 : 당월 지급액 (35,000원/시간 × 시간)

○ 지급일 : 매월 5일 (공휴일의 경우 익일)

○ 지급방법 : 예금계좌 이체

(계좌번호 : 은행명 : 채권자 :)

○ 원천징수 : 사업소득세(3.3%) 또는 기타소득세(22%)

8. 계약조건

○ 강사수당의 지급기준은 1시간당 35,000원으로 한다. 단, 수강인원 미달로
기금에서 강사수당 충당이 어려울 시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 수강인원이 목표인원(명) 이상일 경우 - 1시간 기준 3만5천원

• 수강인원이 목표인원(명) 미만일 경우 - 1개월분 수강료 수입액

※ 1시간을 초과하여 운영하는 과정의 경우 추가 지급할 수 있다. (단,
추가지급액의 범위는 간석3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 “을”은 지급 기준의 강사수당 이외의 기타 비용(제수당 등)을 “갑”에게
청구 할 수 없다.

○ “을”은 업무상 “갑”의 정당한 지시 사항이나 협조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을”의 부당한 조건 요구나 언어폭력, 성적수치심유발 등 수강생들이
강사거부 의사 표출시 “갑”은 사실 확인 후 계약 취소한다.

9. 기 타

○ 모집정원 50%미만시에는 폐강할 수 있다.

○ “을”은 당해 분기 4개 이상의 프로그램 과정에 지원 및 강의활동을 할 수 없다.

○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갑) 주소 용천로 186

간석3동 주민자치회장

(을) 주소

생년월일

성명

(서명/인)

연락처

감사결과 보고서

남동구 간석3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감사결과

건 명			
분 야	운영, 회계	기 간	
범 위			
지적사항	1. 2. 3. 4. 5.		
권고사항	1. 2. 3.		
위와 같이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감 사 : (서명/인)

간석3동 주민자치회 직인 관리 대장

직 인 명				
종 류		☐ 직 인	관리자	
☐ 등 록 · ☐ 재 등 록	(인영)	등 록 일 (재등록일)	년 월 일	
		새 긴 날	년 월 일	
		새 긴 사람	주 소 : 성명 및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최초사용일	년 월 일	
		재 료		
		등록(재등록) 사 유		
		공 고	년 월 일 공고 제 - 호	
		비 고		
폐 기 직 인	(인영)	등 록 일	년 월 일	
		폐 기 일 (분실일)	년 월 일	
		폐기사유	☐ 마멸 ☐ 분실 ☐ 기타()	
		폐기방법	☐ 소각 ☐ 이관 ☐ 기타()	
		폐 기 자 (분실자)	성 명 :	
		공 고	년 월 일 공고 제 - 호	
		비 고		

[별지 제7호 서식]

간석3동 주민자치회 직인 날인 대장

[illegible]

[별표 1]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 및 요율

(제32조제4항 관련)

1. 주민자치센터 시설 사용료

시 설 명	용 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냉·난방 미사용시	냉·난방 사용시	
다목적홀, 회의실, 대강당 등 (부대시설 포함)	강연, 토론, 발표회 등 전용 사용 시	1시간	15,000원	20,000원	기준시간 초과 시 30분당 50% 추가 산정

2.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구 분	기준	수강료			비 고
		주 1시간 이내	주 2시간 이내	주 2시간 초과	
문화, 취미, 교양 등	1개월	14,000원 이하	21,000원 이하	28,000원 이하	재료비 별 도
생활체육	1개월	21,000원 이하	28,000원 이하	35,000원 이하	
체력단련(헬스)	1개월	24,000원 이하			

주민자치센터 사용료(수강료) 감면기준과 비율

(제32조제5항 관련)

1. 주민자치센터 시설 사용료

감면비율	감면대상
전액 감면	1. 구에서 주관하거나 법률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원하는 행사 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 3. 동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 감면	1. 순수 예술부문의 창작활동·공연 2. 초등학생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2.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비율	감면대상
전액 감면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2. 그 밖에 주민자치회에서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 감면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단,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프로그램을 함께 수강하는 보호자 1인에 한하여 감면 가능

※ 감면프로그램 가능 개수는 1인 2개 강좌로 한다.